

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8-30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친일 작곡가 논란이 있던 기존 안산시민의 노래를 새롭게 제정, 조례에 반영해 시민의 자긍심 제고

□ 주요내용

- 제정목적(안 제1조).
- 내용(안 제2조).
- 애창(안 제3조).
- 시행규칙(안 제4조).

□ 제정조례안 : 붙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2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9. 12. 3. ~ 2019. 12. 23. 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해당없음

- 방침결정문 : 붙임3

< 불임 1 >

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를 상징하는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내용) 안산시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애창) 안산시민의 노래는 안산시의 시민이 즐겨 부르고, 각종 행사 시에 애창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이 범 열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총무팀장 정 진 권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 상 두 (행정 3103)

[별표]

안산시민의 노래

작사 / 작곡 이은선

밝고 경쾌하게

mf

역사와 전통 이 살아 숨 쉬는 천년 고도 안산에서
수려한 주양 풍우리의 기상 사원한 노래 봉쪽 또

이어 받은 단원의 장전으로 문화예술을 꽂고 우리 라
거리마다 환락이 넘치는 살기 좋은 젊음의 도시

주르릉 상록수 아름다운 서해안의 선돌과 것 별
기술과 문화가 용함하는 혁신산업 약속 한미래

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성장해 가는 곳
땀흘려 일하고 도전하며 번영하는 살맛나는 행복 도시

(후렴)
밝은 서해안의 미래 머오르는데 양처럼

세계로 편 어가는 안산 힘차게 비상하리라
미래로

f

ff

꿈과 화망을 현실로